

정리노트

주차	차시명	주요 훈련내용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 2.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구제절차 4.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방법
2	성매매 예방 교육	1. 성매매에 관한 편견 2. 성매매에 대한 이해 3. 성매매 처벌 및 예방법
3	성폭력 예방 교육	1. 성폭력에 대한 이해 2.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및 예방법
4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역할별 예방과 대응	1.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관리자의 예방과 대응 2. 성희롱 피해자 또는 피해 주장자의 대처 및 유의사항 3. 성희롱 행위자, 동료 근로자의 대응 및 유의사항

정리노트

1주차.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

1)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1) 사업장의 안전활동 종류

-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됨
-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39조제1항)

- 성희롱의 정의(인권위법 제2조제3호 라목)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2) 성희롱과 성폭력의 관계

(1) 성폭력

- 성을 매개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행위
-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

(2) 성추행(=강제추행)

-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하는 것
-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적인 행사이기만 하면 성립하며,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함(판례)

3) 성희롱 성립 요건 - 성적 굴욕감 유발여부의 판단기준

(1) 행위의 반복성 여부

- 성적 언동 등의 행위는 반드시 반복적이거나 계속적일 필요는 없음
- 한번의 성적 언동도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음

(2) 대상의 특정 여부

-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은 성적 언동의 경우에도 적대적 환경(Hostile Environment) 조성하였다면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음

정리노트

(3) 거부여부의 표시여부

- 피해자가 반드시 행위자에게 직접 그 행위를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 표시를 하여야만 성희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님

4) 성희롱 성립이 되는 경우의 예

(1) 육체적 성희롱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2)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옷차림·신체·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3) 시각적 성희롱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야한 사진을 컴퓨터 배경화면 등으로 실은 경우 개인적 취향의 문제이기는 하나, 그 행위가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초래했고 감정을 표현했음에도 행위가 지속된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음(야한 달력 게시 등)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훑어보는 행위

2.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 환경을 위한 여건 조성함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 미실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정리노트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구제절차

1)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구제절차

(1) 고충의 접수

- 회사 내의 고충처리절차에 따라 고충처리기구의 담당자나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인사·노무 담당부서에서 실시
- 접수는 피해자의 접근도와 이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문서로 할 필요는 없으며 전화나 사내통신망 등 이용 가능

(2) 상담과 조사

- 사건접수와 동시에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
- 피해자, 성희롱 용의자로부터 사건 전모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공정하고 세심하게 조사·기록
- 조사과정에서 지득한 개인정보는 양자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로 비밀 엄수
-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 성희롱 용의자의 대질 대신 증인의 증언 청취
- 피해자와 증인을 보복으로부터 보호
- 공식조사결과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면 담당자는 사업주에게 보고

(3) 확인 및 징계조치

- 사업주는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경고, 견책, 전직, 대기 발령, 정직, 해고 등의 적절한 조치 시행
- 경고 등 가벼운 징계는 성희롱 행위를 근절시킬 확고한 경우에만 해당 → 경고로써 성희롱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경우 더욱 강한 징계조치
- 성희롱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본인의 근무부서 이동

(4) 결과 통지

- 조사를 종결할 때에는 피해자와 성희롱 행위자 모두에게 결과에 대해 고지
- 사업주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치 후에도 피해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심

정리노트

2주차. 성매매 예방 교육

1. 성매매에 대한 이해

1) 성매매에 대한 개념

(1) 개념

-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및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2) 유형

- 비교적 잘 갖추어진 아파트에 살면서 전화로 손님과 약속하여 상대하는 매춘부
- 일정한 장소에 독립적으로 집단을 이루어 거주하는 매춘부
- 밤거리 여인이라 표현되는 이들
- 안마 시술소에서 시중을 드는 여성들
- 술집에 소속되어 있는 매춘부
- 여성을 대상으로 매춘행위를 하는 남자들
- 동성애 매춘부

2. 성매매 처벌 및 예방법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한 자
-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

(2)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
-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
-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
-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

정리노트

-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의 소개
 -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를 한 자
 -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자
 -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자

- (4)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성매매를 한 자

- (5)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 (6)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 (7)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 (8)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 (9) 처벌받지 않음
 - 성매매를 한 아동·청소년

정리노트

(10)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법률 제289조(인신매매)

- 인신매매 : 대가를 지급받고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
-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11) 성매매 목적

- 직접적 성매매
- 음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의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

(12) 성매매 행위

- 대가를 지급받고 대상자 인수
- 대상자를 인계하거나, 인계받을 경우
- 대상자의 모집·이동·은닉

정리노트

3주차. 성폭력 예방 교육

1. 성폭력에 대한 이해

1) 성폭력에 대한 개념

(1) 개념

-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강요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동

(2) 유형

- 성폭행 : 강간과 강간 미수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여성 성기에 남성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 성추행 : 여성 성기에 남성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외에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성적 접촉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 및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

- 성희롱 :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아동성폭력 :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 친척성폭력 : 4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성폭력으로 대부분은 성폭행(강간)이 차지

- 데이트 강간 : 이성 간의 데이트 중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는 것

- 비폭력 성적 학대 : 음란물(잡지, 동영상 등), 음란 전화, 음란 편지 등을 통해 모욕감을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거나 여성의 나체를 몰래 훑쳐보는 등의 행위

2.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및 예방법

1) 성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

- 전화로 신고

-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병원이나 경찰서에 감

- 성폭력이 발생한 자리는 그대로 보존

- 증거물들은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보관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음

- 주위사람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

정리노트

2)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1) 숙소 지원제도

-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

- 대상 : 성폭력 피해자로서 조사를 마친 후에 ‘긴급쉼터’ 등 보호시설 연계가 곤란한 피해자 가운데 임시숙소가 필요한 피해자 또는 그 외 범죄 피해자 중 임시숙소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피해자
→ 경찰관서에서 선정한 숙박업소에서 1일에서 최대 5일까지 단기간 숙박비용 제공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 대상 : 성폭력 피해 상담결과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성폭력 피해자
→ 성폭력 피해자 대상 긴급피난처 및 장기보호시설로 연계가능

(2) 의료적 지원제도

- 성폭력 피해자 회복 지원제도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게 지원 →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 치료와 낙태/출산, 성매개 감염 검사 등 의료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거나 성폭력으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각종 검사와 치료 등 의료서비스 2회 300만 원 이내 지원

(3) 심리/법률적 지원제도

- 심리상담 지원

- 대상 : 성폭력 외에도 살인, 강도 같은 강력사건의 피해자와 가족
→ 피해자전담경찰관의 피해자 심리 평가 및 상담 지원
- 법률 지식과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일반인의 2차 피해 방지
→ 무료로 법률 상담 및 소송대리, 형사변호, 기타 법률적 지원 등

- 성폭력 피해자 회복 지원제도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병비와 돌봄비를 지원
- 간병비 : 피해자 본인 부담후 최대 1개월 동안 300만 원 한도에서 보전
- 돌봄비 : 본인 부담 후에 최대 6개월의 비용을 300만 원 한도에서 보전하고 13세 미만 피해아동 또는 피해자의 13세 미만의 자녀로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한 함

정리노트

(4) 경제적 지원제도

- 긴급복지 지원제도

- 제도 기준에 따라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지원
-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회 학비 지원 및 전기요금 등 동정기 난방비 1회 지원

- 기타 관련기관 경제적 지원 의뢰

- 다른 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성폭력 피해자
→ 범죄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지원 실시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지 지원
-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4) 성폭력 예방법

(1)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

- 더러운 곳에(사람에게) 되도록 가지 말 것
- 남의 말을 쉽게 믿지 말 것
- 성폭력 예방 지침을 따를 것

정리노트

(2) 가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

-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당신 것만큼만 인정
- 스트레스 받는다고 폭력을 행사하지 말 것!
-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

(3) 방관자가 되지 않는 방법

- 피해자 편에서 사고해야 함
- 인권 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공정한 사회,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남녀 차별 철폐는 남자와 여자 모두를 위해 필요한 일

정리노트

4주차.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역할별 예방과 대응

1.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관리자의 예방과 대응

1) 관리자의 성희롱 예방

- 스스로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됨
-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와 성희롱 피해를 당하는 하급 직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
- 업무 수행 시 일체의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함
- 술 위주의 회식 문화를 건전하게 바꾸고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미연에 방지해야 함
- 성희롱적 언행을 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제지하고 주의를 주어야 함
- 스스로 술에 취해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2) 성희롱 발생 시 관리자의 대처

- 최대한 피해자 입장에서 경청, 공감해 줄 것
- 사내 성희롱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안심시킬 것
- 사내 성희롱 처리절차에 최대한 협조할 것
- 공정한 중재자이자,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
- 사건이 왜곡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할 것
- 피해자가 사내 또는 사외 기관을 통해 심리보호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것
- 피해자에 대한 보복, 집단적 괴롭힘, 왕따 등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할 것

2. 성희롱 피해자 또는 피해 주장자의 대처 및 유의사항

1)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가져야 할 인식과 태도

- 성희롱은 행위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는 인식 필요
- 성희롱인지 여부가 애매한 언행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느낀다면 문제제기
- 성희롱은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

2) 성희롱 발생 시 사내 제도와 절차를 이용한 대응

(1) 성희롱 발생 당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단호하게 거부의 의사표현을 해야 함 : 경미한 수준의 성희롱에 대해서 거부와 불쾌감의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더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 발생을 예방

정리노트

- 성희롱 행위의 정도와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어떠한 대응을 하는 것이 나에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

- 방법1 : 외부 기관 이용이나 법 제도 이용
- 방법2 : 사내 제도와 절차를 이용

(2)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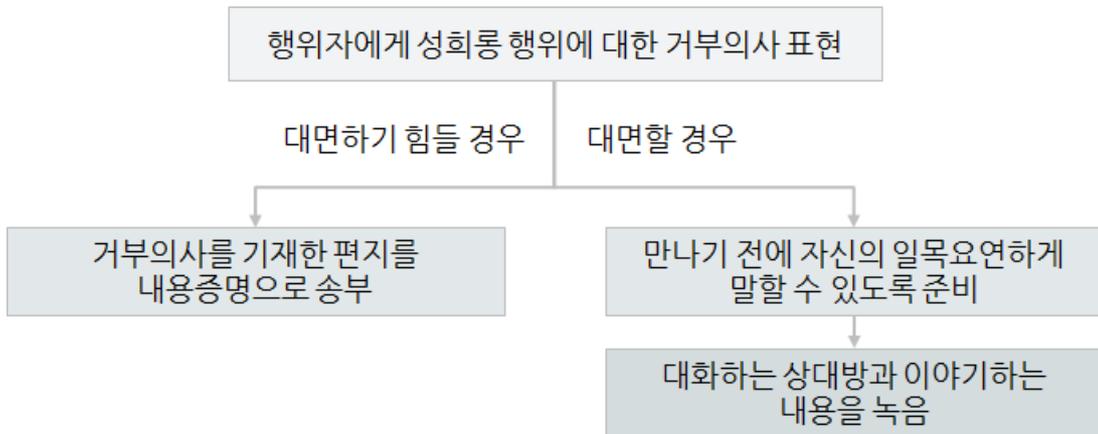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

- 방법1 : 행위자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전제로 합의할 것인가?
- 방법2 : 행위자에 대한 처벌 내지 손해배상을 원하는가

-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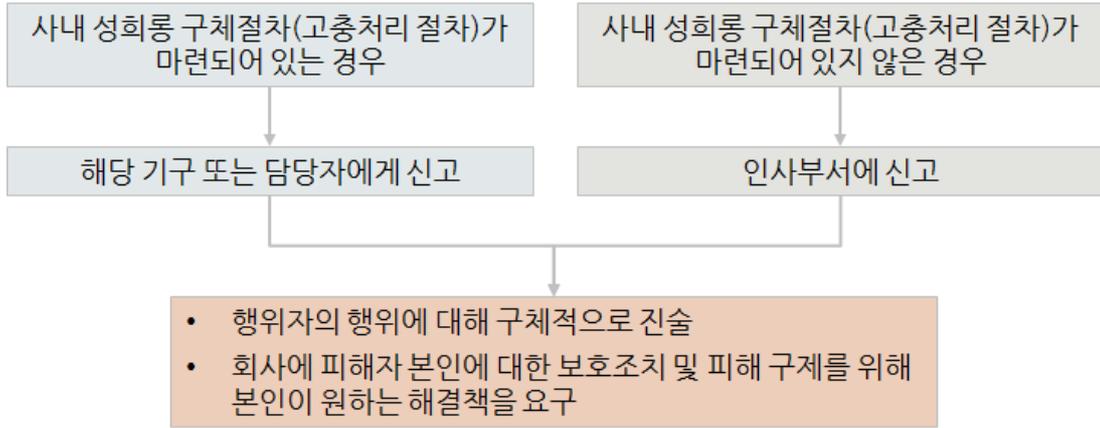
- 자책이나 회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신을 하지 말 것
- 누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요구할 것
- 사내의 고충처리절차 등 성희롱 문제 해결 절차를 숙지할 것
- 사내의 여직원회, 노동조합, 외부의 상담기관이나 법률지원단체 등을 찾아본 후 적절한 해결 방법을 선택할 것

(3) 증거수집



정리노트

(4) 직장 내 해결절차 이용



※ 상황을 견디기 힘들 경우, 휴가 사용을 승인받음

3) 성희롱 발생 시 외부 기관을 통한 대응

구분	이의제기 방법	대상(행위)	대상자	관련 법규	결과
비사법적 권리구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성희롱 피해자(또는 가해자)에 대한 부당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	성희롱 피해자 또는 가해자에게 일쪽의 행위를 한 사용자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부당징계 결정, 복직 또는 금전보상 명령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고용평등법 위반행위	고용평등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주	고용평등법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입건 송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성희롱 행위	성희롱 행위자, 법인, 단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인권위원회법	행위자, 책임자에 대한 사내 조치, 손해배상, 수강 권고
사법적 권리구제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소, 고발	성희롱 행위	성희롱 행위자, 법인, 단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고용평등법	입건 수사 후 검찰 송치, 기소, 처벌
	검찰 고소, 고발	형사처벌 되는 법 위반 행위	형사처벌 되는 법 위반 행위자	고용평등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입건 수사 후 검찰 송치, 기소, 처벌
	민사소송	성희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손해에 책임이 있는 자(행위자, 사용자)	민법	손해배상 판결